

## 2019년도 친환경 인증기관 신규지정 계획 공고
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2019년도 친환경 인증기관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1. 25.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

### 1. 신청대상 및 신청 기간

- 신청대상 : 국내소재 기관 또는 단체
- 신청서 접수기간 : 2019. 2. 1. ~ 2019. 12. 31.
- ※ 신청대상은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유기수산물 등을 인증하고자 하는 국내 기관 또는 단체

### 2. 인증기관 지정기준

-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“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” (수품원 고시 제2018-3호)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
- ※ 접수기간 전 관련 법 등 개정 시, 시행 일자에 따라 변경된 기준 적용

### 3. 신청방법

- 신청장소 :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 
(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, ☎ 051-400-5763)
- 신청수수료 :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“[별표 13]수수료” 에 따름
- 신청방법 : 우편 또는 방문접수

### 4. 구비 서류

-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1부
-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
-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### 5. 지정절차

